C - 16 - 2016

#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2016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 김창한

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정성춘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11년 11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16년 7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○ 관련규격 및 자료

- 건축공사(미장공사) 표준시방서(국토교통부)

○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(총칙) 제1절(추락에 의한 위험방지) 제7장(비계), 제2편(안전기준) 제1장(기계·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)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
- 고용노동부 고시 2012-92호(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), 고용노동부 고시 2012-95호(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)

0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 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지침에 우선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11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에 의거 미장공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, 전도, 감전 및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장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시멘트 모르터 재료를 사용하여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건설현장 미장공사 작업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미장공사"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흙손 등을 사용하여 모르터(mortar), 플라스터(plaster), 회반죽, 흙 등의 부정형 재료를 바르거나 뿜칠하는 공사를 말한다.
- (나) "초벌, 재벌, 정벌바름"이라 함은 벽미장 작업 시 여러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지는데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, 재벌바름, 정벌바름이라 한다.
- (라) "진동기(Vibrator)"라 함은 콘크리트 타설 시 진동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계 기구를 말한다.
- (마) "휘니샤(Finisher)"라 함은 콘크리트 타설 후 바닥면처리를 하기 위하여

C - 16 - 2016

사용하는 미장용 회전형 동력기기를 말한다.

〈출처:daum.net〉







[콘크리트 진동기(Concrete Vibrator)]

[휘니샤(Finisher)]

〈그림 1-1〉미장용 기계・기구

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4. 미장공사 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

# 4.1 자재 운반

# (1) 인력운반

- (가) 자재운반 작업 시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운반물 무게의 적정성이 유지[남자 196N~294N(20~30kgf)], [여자 98N~147N(10~15kgf)] 이하)하 여야 한다.
- (나) 49N(5kgf)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 취급 물품에 대하여 작업근 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.

#### (2) 손수레 운반

- (가) 손수레 운반 통로는 가능한 직선거리로 설치하고 전도 방지를 위하여 급 회전을 금한다.
- (나) 손수레 운반 시 뛰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앞에서 끌어 운반한다.

C - 16 - 2016

(다) 운반 중 자재가 주변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하며, 가능한 2인 1조로 운반한다.

#### (3) 운반작업

- (가) 자재를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적치하며, 안전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통 로 위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않는다.
- (나) 자재는 작업부위에 필요한 양만 적치하도록 한다.
- (다) 자재는 던지지 않도록 하며 비계의 작업발판 상부 적치시에는 허용하중을 고려하여 적당량만을 올려놓도록 하되 해당 비계의 비계기둥 사이 허용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(예: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의 적 재하중이 3,920N(400kgf)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)
- (라) 작업공구를 건네주는 경우 던지지 않도록 하며, 작업공구는 사용하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토록 한다.

#### 4.2 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

- (1)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진동기, 휘니샤 등 사용 기계·기구에 대한 감전, 협착 등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.
- (3)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관리감독자는 작업의 위치 및 장소를 사전 확인하고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장 주변 슬래브단부,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 또는 개구부 덮개(위험표지 부착)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2012-95호(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)에 따른다.

C - 16 - 2016

- (6)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.
- (7) 채광이나 통풍이 안 되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충분한 밝기(75lux 이상)의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한다.

# 5. 벽 미장공사 중 안전조치사항

- 5.1 바탕처리, 면정리, 먹줄 놓기
  - (1) 작업 전 작업부위의 자재를 정리·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.
  - (2) 바탕면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철선, 플랫타이 등 돌출물 제거 및 면처리 작업 시 근로자는 보안경,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  - (3) 기준실의 고정을 위한 못은 망치로 무리하게 타격하지 않도록 하고, 근로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.

#### 5.2 재료 비빔

- (1) 재료비빔 시 이동식 전기기기(모르터 믹서 등)를 사용할 경우 전기기기의 이 상 유무를 확인하고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KOSHA GUIDE E-56-2013(전기기기의 코드접속기구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른다.
  - (2) 재료비빔 시 시멘트 분말 비산에 의한 호흡기 질환재해방지를 위하여 방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#### 5.3 미장 바름

(1) 미장바름은 초벌바름, 재벌바름, 정벌바름 순으로 이루어 지며 <그림 5-11>과 같다.



① 초벌바름



② 재벌바름



③ 정벌바름

# <그림 5-1> 벽 미장 바름 순서

- (2) 미장작업시 작업발판은 작업높이에 따라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변 의 벽돌, 페인트통 등 불안정한 발판의 사용을 금지한다.
- (3) 고소부위 미장작업을 위하여 강관비계, 이동식비계 등의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KOSHA CODE C-28-2011(이동식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) 및 KOSHA CODE C-30-2011(강관비계 설치및 사용안전지침)에 따른다.
- (4) 작업발판 단부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KOSHA GUIDE C-08-2015(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지침)에 따른다.
- (5) 작업발판 위에 재료를 적치하여야 할 경우는 폭이 최소한 60cm 이상이어야 한다.
- (6) 계단실 등 통로부위 미장공사를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수평재는 돌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돌출부위에는 보호캡을 설치하여 충돌을 방지하다.
- (7) 고소부위 미장작업 시 작업공구, 미장재료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하부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통행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8) 계단실 등 경사부위 미장공사를 위하여 작업발판을 경사로 설치할 경우 근로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고용 노동부 고시 2012-92호(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)에 따른다.
- (9) 작업발판 위로 못, 철선 등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#### 6. 바닥 미장공사 중 안전조치 사항

- 6.1 타설 전 안전조치 사항
  - (1) 작업 장소 및 위치를 확인하고 바닥미장 장비의 운반 및 작업에 장해요인을 파악 후 장비 운반방법 및 이동통로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C - 16 - 2016

- (2) 휘니샤 장비는 날접촉 방지장치 설치, V-벨트 방호덮개 설치 및 손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휘니샤를 양중기로 인양 시 적정 인양장비를 선정하고 인양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장 주변 개구부,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고용노동부 고 시2012-95호(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)에 따른다.
- (5) 작업장 주변 돌출물 등은 사전에 제거를 하거나 보호캡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장비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임시분전반을 설치하고 금속제 외함 접지, 누전차단기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7)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진동기, 휘니샤는 지정된 장소에서 연료를 주입하 도록 하고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.

# 6.2 바닥 미장공사

(1) 바닥 미장공사는콘크리트 타설 후 1차 고름작업, 2차 면처리, 휘니샤 마감 및 최종마감 순으로 이루어지며 <그림 6-1>과 같다.



① 1차 고름작업



③ 휘니샤 마감



② 2차 면처리



④ 최종마감

<그림 6-1> 바닥 미장작업 순서

# C - 16 - 2016

- (2) 휘니샤 등 기계 미장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는 흙손 등을 사용하여 작업한다.
- (3)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동로를 따라서 1차 고름작업<그림 6-1>을 실시하고 작업 근로자에게는 절연용 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(4) 1차 고름작업 시 슬래브 철근 등에 전도가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대하여 작업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.
- (5) 2차 면처리 작업을 위하여 진동기를 사용하여 뒤로 물러서면서 작업할 경우 후방에 자재 적치 등 장해물은 제거하고 슬래브 단부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휘니샤 작업 시 장비의 접촉방지를 위하여 근로자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7) 이동식 전기기기를 사용할 경우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에서 인출 사용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KOSHA GUIDE E-56-2013(전기기기의 코드접속기구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른다.
- (8)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작업 시 발생 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 방하기 위해 작업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.

#### 6.3 장비제한 지점 흙손처리

- (1) 휘니샤(Finisher) 작업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흙손으로 미장작업 시 작업 장 주변 돌출물 등 장해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2) 슬래브 단부 주변 작업시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옥상층, 화장실 및 기타배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물고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# 7. 작업완료 후 안전조치사항

C - 16 - 2016

# 7.1 가시설 해체공사

- (1) 작업완료 후 가시설 해체 작업 시 설치 역순으로 작업하되 2m 이상 고소부 위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2) 해체 작업 시 해체물을 아래로 던지지 않도록 하고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3) 해체작업 후 해체물은 안전한 곳에 적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7.2 양생·보양

- (1) 벽 미장공사 후 1~2일간 습윤 보양 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완료 후 모르터 찌꺼기 및 각종 작업 잔재물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- (3) 바닥 미장공사 후 3~4 시간 후 보양 실시를 하여야 한다.
- (4) 살수, 비닐 등으로 보양 작업 시 근로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작업방법 및 안 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5) 보양 후 근로자 통행 시 전도재해 방지를 위하여 출입금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거나 별도의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6) 동절기에 양생을 위해 열풍기 화로 등 화기를 사용할 경우 소화기를 배치하고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밀폐된 작업 장소에는 유해가스, 산소결핍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연속적으로 환기하여야 한다.